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비 예산외 의무부담 의결(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년월일 : 2005.10.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 이유

-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시민의 문화의식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영주시 가흥동 산 45-7번지 일원에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사업비 230억원 조달을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 부담행위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사업 내용

○ 현 황

- 장 소 : 가흥동 산 45-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61,783m<sup>2</sup>(18,689평)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2004년 4월  
※ 부지내 시립도서관 694m<sup>2</sup>(210평, 2003. 9. 24준공)

○ 건립 규모

- 사 업 비 : 230억원정도(국비20, 도비10, 시비200)  
(공사비206, 설계비9, 감리비10, 부대경비5)  
※ 공사비에 부지정지비 포함
- 규 모 : 연건평 8,430m<sup>2</sup>(2,550평)
  - 대공연장 : 1,000석
  - 소공연장 : 400석
  - 전 시 장 : 230평정도 규모 및 부대시설
  - ※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

- 건설·임대기간
  - 건설기간 : 2006 ~ 2008
  - 임대기간 : 2008 ~ 2028(20년간)
- 연간 시비부담 : 24.1억원정도(임대료17.4+운영비6.7억원)
  - 임대료 : 349억원정도(연 17.4억원)
    - ※ 원리금 균분 상환, 수익률 5%(8.24현재 4.41%,장기 국채금리 수준 연동)
  - 운영비 : 215억원정도(연10.8억원)
    - 운영수익 : 연간 4.1억원정도
    - 운영비부담액 : 연간 6.7억원정도
    - ※ 물가상승률 3.0%적용

### 3 추진경과

- BTL 사업수요조사 : 2005. 2. 4
- 2005년 BTL대상사업 신청 : 2005. 2. 4
- 문화관광부 BTL대상사업 확정(전국4개소) : 2005. 4. 11
  - 영주시, 구리시, 부천시, 의왕시
-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건축기본계획 용역 : 2005. 7. 11
-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건축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회 : 2005. 8. 17
-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건축기본계획 성과품 접수 : 2005. 8. 23(주)공간

### 4. 주무과 의견

- 가흥근린공원(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조성 사업기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100조의 규정과 도시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사업기간 : 2007. 12. 31일까지 연장) 고시하였고

-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2005. 8. 23 (주)공간]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05년도 사업으로 금년중에 고시가 될수 있도록 제반절차(적격성조사 용역,문화부민투심위원회, 고시, 협약체결)를 조속히 추진코자 함.

5. 첨부자료 : 별첨

1) 사업부지 배치도

2) 관련공문

- 가흥근린공원 조성사업(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실시계획변경 인가 통보
- 지방자치단체 BTL 사업 추진방법 안내
- '05년도 문화부문 BTL 사업 추진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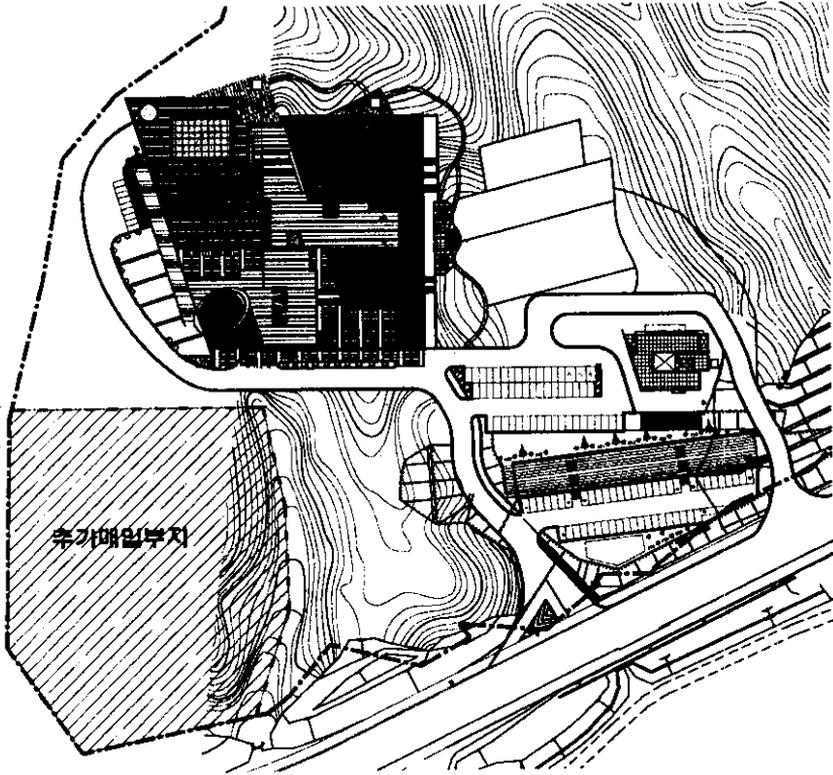
3) 관련법령 발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4)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관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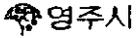
- 2000년 계획과 비교
- 김천시 건립현황과 비교
- 기채와 BTL 사업의 비교

1)사업부지 배치도



2) 관련공문

· 가흥근린공원 조성사업(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실시계획변경 인가 통보



영 주 시



수신자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 목 가흥근린공원 조성사업(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통보

1. 문화관광과-1986(2004.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하신 가흥근린공원(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조성 사업기간 변경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100조의 규정과 도시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덧붙임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도교58414-1680(1999. 8.13)호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고시문 사본 1부(별송), 끝.

영 주 시 장

관인생략

★지방행정 주사보    감태영    지방토목주사    장호철    도시개발 과장    전결 04/02 김병문

별조자

시행 도시개발과-2469 ( 2004.04.02. ) 결수 ( )  
우 750-701 경상북도 영주시 휴전동 470 / http://www.yeongju.go.kr/  
전화 (054)639-6341 /전송 (054)639-6349 / kty3927@yeongju.to / 공계

영주시고시 2004- 호

### 영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1. 영주도시계획시설 가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도시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주시청 도시개발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 3.

## 영 주 시 장

가.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

- 1) 사업명칭 : 가흥근린공원(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조성
- 2) 위 치 : 영주시 가흥동 산45-7번지 일원
- 3) 사업면적 : 61,633㎡
- 4) 사업기간

구 분	변 경 내 역	비 고
당 초	1999. 8. 13. ~ 2003. 12. 31까지	
변 경	1999. 8. 13. ~ 2007. 12. 31까지	

※변경사유 : 시립도서관 건립은 준공단계에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 미확보로 당초기간내 준공이 불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함.

- 5)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 6) 기타사항( 사용할 토지 및 인가조건등) : 변경없음. 끝

· 지방자치단체 BTL 사업 추진방법 안내

“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BTL사업 추진방법 안내

1.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BTL사업의  
협약체결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안내 한 바  
있습니다(2005. 6.27, 예산담당관실-3812호)

2. 그 이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결과,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BTL사  
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8.9,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94).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청내 실과장, 시·군

★지방행정주사 윤위영 지방행정사무관 이승율 예산담당관 전결 08/10  
김종태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민외기

시행 예산담당관실-4772 ( 2005.08.10. ) 접수 기획감사담당관실-4093 ( 2005.08.10.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

/전송 (053)950-

/ name@gb.go.kr

/ 공개

· '05년도 문화부문 BTL 사업 추진협조 요청

역사의 승결, 문화의 만남, 국립중앙박물관(10월28일 개관)

문화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5년도 문화부문 BTL사업 추진 협조요청

1. BTL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문화시설을 조기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귀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9월초순 개최한 범부처BTL사업추진T/F제8차회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방침중 금년말까지 고시가 되지 않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재계상 불가(이월 불가)하다 하므로, '05년도 사업은 금년중에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단위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적격성조사용역, 문화부민투심위원회, 고사)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용역을 위한 추경예산을 미반영한 지자체에서는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관광부장



수신자 영주시장, 의왕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제주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강진군수, 담진군수, 경주시장, 전라북도지사, 서귀포시장, 안동시장, 신안군수

행정사무관 윤용준 문화정책과장 박영대 문화정책국장 09/12 이성환

영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132 ( 2005.09.13. ) 접수 문화관광과-09 ( )

우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관광부 / www.mct.go.kr  
전화 02-3704-9417 /전송 02-3704-0429 / yunj@mct.go.kr / 공개

## 2) 관련법령 발취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7.21 법률 7604호, 시행일 2006.1.22, 현재시행법령확인]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民間의 投資를 촉진하여 創意的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개정 2005.1.27>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生産活動의 基礎이 되는 施設, 당해 施設의 效用을 增進시키거나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는 施設 및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道路附屬物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鐵道
- 다.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
- 라. 港灣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
- 마. 航空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
- 바. 墾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 사. 水道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및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 아. 下水道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 및 同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 자. 河川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河川附屬物
-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 카.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
- 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
- 파. 전원개발촉진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源設備
- 하. 都市가스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
- 거.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더. 流通團地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
- 러. 貨物流通促進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物流施設중 貨物터미널 및 倉庫
- 머.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터미널
- 비. 삭제 <2002.12.11>
- 서. 觀光振興法 第2條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
- 여. 駐車場法 第2條第1號나目的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 저. 都市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
- 커.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처리예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同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 터.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
- 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예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體育施設
- 허. 靑少年基本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修練施設
- 고. 圖書館및圖書振興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
- 노.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및 美術館
- 도. 國際會議產業育成예관한法律 第2條第3號에 規定에 의한 國際會議施設
- 로. 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知能型交通體系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예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 포.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포.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두.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新設·増設·改良 또는 운영에 관한 事業을 말한다.
  - 3. "歸屬施設"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 4. "主務官廳"이라 함은 關係法令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業務를 管掌하는 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 5. "民間投資事業"이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提案事業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라 第7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施行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6. "實施協約"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主務官廳과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간에 事業施行의 條件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다.
  - 7. "事業施行者"라 함은 公共部門외의 者로서 이 법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의 지정을 받아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을 말한다.
  - 8. "附帶事業"이라 함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과 연계하여 施行하는 第21條第1項各號의 事業을 말한다.
  - 9. "使用料"라 함은 使用料·利用料·料金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利用者가 當該施設의 事業施行者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支拂하는 金額을 말한다.
  - 10. "公共部門"이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을 말한다.
    - 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 나.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종 公社 또는 公團
  - 11. "民間部門"이라 함은 公共部門외의 法人(外國法人과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2. "民官合同法人"이라 함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이 공동으로 出資하여 設立하는 法人으로서 第7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말한다.
  - 13. "關係法律"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施行함에 있어서 民間投資事業과 관련된 다음 各目에 해당하는 法律을 말한다.
    - 가. 道路法
      - 나. 有料道路法
      - 다. 철도사업법
      - 라. 철도건설법
      - 마. 都市鐵道法
    - 바. 港灣法
    - 사. 航空法
    - 아.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 자. 營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 차. 水道法
    - 카. 下水道法
    - 타. 河川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0호]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임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6113호]

제35조 (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영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4)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관련 비교

## · 2000년 계획과 비교

구분	2000년영주종합 문화예술회관	BTL 사업추진계획	비 고
총공사비	261억원 (부지매입9.6억원별도)	230억원	
부지면적	61,783m <sup>2</sup> (18,689평)	61,783m <sup>2</sup> (18,689평)	
연면적	8,558m <sup>2</sup> (5,558평) ※도서관(2층) 693m <sup>2</sup> 포함	8,430m <sup>2</sup> (2,550평)	
규 모	지하1, 지상3층	지상3층	
대공연장	4,832m <sup>2</sup> (1,006석)	3,895m <sup>2</sup> (1,000석)	
소공연장	1,472m <sup>2</sup> (300석)	1,540m <sup>2</sup> (400석)	
전 시 실	-	970m <sup>2</sup> (227평)	
문화의집	928m <sup>2</sup> (280평)	1,145m <sup>2</sup> (346.3평)	
편의시설	543.8m <sup>2</sup> (164.5평)	580m <sup>2</sup> (175평)	
경 비 실	72.5m <sup>2</sup> (22평)		
기 타		300m <sup>2</sup> (90.7평) (사무실)	

· 김천시 건립현황과 비교

구 분	김천문화예술회관 2000년4월개관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사업추진계획	비 고
총공사비	300 억원 (부지매입50억포함) 국40,도15,시비245억	230억원	
연 면 적	12,165m <sup>2</sup> (3,680평)	8,430m <sup>2</sup> (2,550평)	
대공연장	1,000석	3,895m <sup>2</sup> (1,000석)	
소공연장	278m <sup>2</sup> (84평) -200석	1,540m <sup>2</sup> (532평) -400석	
전 시 장	671m <sup>2</sup> (203평)	970m <sup>2</sup> (293평)	
회의시설	250m <sup>2</sup> (75.6평)	1,145m <sup>2</sup> (346평) (문화센터)	
야외무대	300석	630m <sup>2</sup> (190평) (편의시설.사무실)	
취미교실		250m <sup>2</sup> (81평)	
연간운영비	30억원 (10억 예술단체보조)	10.8억원	
공연대관 수 입	1.4억원	4.1억원	
공사방법	자체사업	BTL 사업	
년간 시비부담	.	17.4억원(20년)	

## · 기채와 BTL 사업의 비교

구 분	기 채	BTL 사업 (현부지)	비 고
관련법	지방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 체	영 주 시	민 간	
문화관광과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검토 필	
경제교통과	주차장법		
환경보호과	정화조법		
도시개발과	국토의계획및 이용관한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변경인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도시공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실시계획인가)-기허가	
농축산과	농지법	관련법 검토 필	
수도사업소	상하수도법		
장 점	건립비 과다	사업비 확보 수월	
단 점	-예산확보 어려움 지방중기재정계획, 투.용자 반영 200억이상(중앙투.용자대상) 기채가능금액140억	20년상환으로 시비 부담 (투.용자계획 제외)	
기 간	4년~	2년	
기 타	기채사업 추진불가	년내협약 완료시 가능	